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1110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현완

피 고 E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호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F(G생) 사이에 2022. 5. 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F에게 2022. 5. 9. 접수 제9461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원고들에게 ‘내가 올해 H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세관에서 금이 들어오면 3개월에 한 번씩 경매를 하게 되고, 이를 현금으로 매수한 다음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무조건 연 50%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지급하여 주면 그에 대한 이자를 연 36%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원고 A으로부터 2022. 2. 4.부터 2022. 4. 26.까지 231,000,000원을, 원고 B으로부터 2022. 2. 8.부터 2022. 4. 26.까지 150,000,000원을, 원고 C로부터 2022. 2. 28. 30,000,000원을, D로부터 2022. 3. 14.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F은 2022. 5. 9. 본인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이하 위 이전등록의 원인이 된 F과 피고 사이의 2022. 5. 9.자 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F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위 가.항 기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611호). F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3노2706호).

[인정근거] 갑 제2,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A은 F과 함께 나머지 원고들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F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F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따라서 F이 명의신탁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가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F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의하면 F은 H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금과 관련된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F의 위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F이 원고 A에게 F이 원고들의 돈을 재투자한 I에 대하여 알렸으므로 원고 A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F은 본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원고 A 관련 부분을 포함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F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A을 기망한 사실과 원고 A이 F으로부터 투자자 모집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양립 가능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F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동산인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대외적 관계인 채무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약정 유무를 불문하고 자동차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이는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렇다면 F과 피고 사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명의신탁약정 관련 피고의 주장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¹⁾로도 해석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F과 피고 사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①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가 실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비록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피고가 을 제3호증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을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F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 명의 통장에 혼입된바, 피고가 F에 대하여 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가 매매대금을 출연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애초에 피고 명의 통장의 계좌는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F에게 송금한 돈은 송금 즉시 F의 J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F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F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설령 F과 피고 사이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① 피고가 F의 자녀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②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F은 원고들에게 4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법원의 부산 서구,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F은 달리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③ F은 이 사건 양도계약과 비슷한 시기인 2022. 5. 6. 자신의 배우자인 K에게 본인 명의 김해시 L아파트 M호를 증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도 평가된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다.

3) 피고의 악의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반환의무의 발생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바 피고는 위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물반환으로서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22. 5. 9. 접수 제9461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현

별지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
1. 제원관리번호 : A08-1-00108-0109-1318
1. 차명 : 그랜저(GRANDEUR)
1. 차종 : 승용 대형
1. 차대번호 :
1. 원동기형식 : L6DB
1. 등록연월일 : 2018-09-04
1. 최종소유자 :
1. 사용본거지 : 경상남도 창원군 *** ***** ****, ****. 끝.

1)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면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하여 F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 명의이전의무의 변제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